

워싱턴 새언약교회 내규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: 본 교회는 워싱턴 새언약교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New Covenant Church of Washington 로 표기한다.
- 제 2 조: 본 교회는 복음언약교회 (The Evangelical Covenant Church) 에 소속하며, 워싱턴 주정부에 비영리 법인체로 등록한다.
- 제 3 조: 본 교회는 개인의 신앙양심의 자유를 존중한다. 그러나 교회의 공적인 신앙 노선은 복음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을 표준으로 본 교회 당회의 지도에 따른다.
- 제 4 조: 본 교회의 행정과 운영은 ECC 의 헌법과 규칙에 준하되, 본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은 본 내규를 우선으로 한다.

제 2 장 교회의 직분

- 제 5 조: 교회 내의 직분의 구별은 다만 그 성직의 위임과 임무에 있고 결코 권위와 명예에 있지 아니하다.
- 제 6 조: 담임목사는 성경과 헌법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당회와 제직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⅔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빙한다,
- 제 7 조: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0 세로 하며, 시무 임기는 5 년으로 하고 공동의회 투표의 ⅔ 이상의 동의로 재신임을 얻어 연임할 수 있으며, 연임후에는 안식년을 갖는다. 안식년 후에는 재신임을 얻어 다시 시무할 수 있다. 안식년 기간은 당회에서 결정한다.
- 제 8 조: 장로는 만 40 세 이상 65 세 이하의 본 교회 안수집사로서 성경의 표준(딤후 3:1-7, 행 20:28-35)에 맞는 자 중에서 당회의 공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⅔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며, 장로의 수는 당회에서 교회의 유익에 따라 정한다.
- 제 9 조: 장로의 정년은 만 70 세로 하며, 시무 임기는 5 년으로 하고 공동의회 투표의 ⅔ 이상의 동의로 재신임을 얻어 연임 할 수 있으며, 연임 후에는 안식년을 갖는다. 1 년 안식년 후에는 재신임을 얻어 다시 시무할 수 있다. 단, 정년 은퇴한 장로외에 다른 시무장로 부재 시 정년 은퇴한 장로가 새로운 시무장로가 임직될 때까지 시무장로로서의 사역을 담당한다².
- 제 10 조: 협동장로는 휴무 또는 전입한 장로 중에서 당회에서 임명하며, 본교회에서 5 년 이상 시무후 정년은퇴한 장로는 원로장로로서 교회를 섬긴다.

¹ 담임목사 정년 만 70 세로 주후 2023 년 1 월 15 일 공동의회에서 개정되어 첨가된 내용이다.

² 다음 “단, 정년 은퇴한 장로외에 ... 담당한다” 구절은 주후 2022 년 1 월 19 일 공동의회에서 수정되어 첨가된 내용이다.

- 제 11 조: 안수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된 후 만 1 년 이상이 경과하고 성경의 표준 (딤후 3:8-13, 행 6:3)에 맞는 서리집사 및 협동안수집사 중에서 당회의 공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⅔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.
- 제 12 조: 협동안수집사는 전입한 안수집사 중에서 당회에서 임명한다.
- 제 13 조: 서리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가운데 믿음이 진실하고 성실한 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1 년이다.
- 제 14 조: 집사는 목사와 장로를 협조하여 빈곤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교회의 서무, 회계, 구제, 봉사, 교육, 선교, 전도, 친교등 제반 실무를 담당 한다.
- 제 15 조: 권사는 무흠히 5 년을 경과한 만 45 세 이상의 여자 서리집사 및 본 교회에 등록된 후 만 1 년 이상이 경과한 협동권사 중에서 당회의 공천에 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⅔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며, 권사의 임기는 만 70 세 까지로 한다.
- 제 16 조: 협동권사는 전입한 권사 중에서 당회에서 임명한다. 본 교회에서 정년 은퇴한 권사는 원로권사로서 교회를 섬긴다. 전입한 70 세 이상의 권사는 당회의 결정에 의하여 원로권사로 봉사한다.
- 제 17 조: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, 교인을 심방하며 특히 병자와 생활이 어려운자, 시험중에 있는자,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,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.

제 3 장 교회의 기구

- 제 18 조: 본 교회는 의결집행기관으로서 공동의회, 당회, 제직회를 두며 교회의 유익에 따라 당회와 제직회의 결정으로 교육, 선교, 전도, 봉사, 친교 등을 위한 기관들을 설치한다.
- 제 19 조: 공동의회는 만 18 세 이상의 본 교회 등록 세례 혹은 침례교인 전체로 구성하며, 등록교인이라 함은 교인등록 신청후 당회 또는 담임목사의 면담을 거쳐 교회 앞에 공포한 교인을 말한다.
- 제 20 조: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 또는 제직회원 ½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장이 소집하며, 교회 내규의 제정과 개정, 예산결산 확정, 교회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, 담임목사청빙, 장로, 집사, 권사의 선출등 교회의 중요한 안건을 의결한다. 공동의회는 소집은 최소 2 주연속 안건과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안건 외에는 처리하지 못한다.
- 제 21 조: 당회는 목사와 시무장로와 안수집사로 구성한다.³
- 제 22 조: 당회는 성경과 헌법에서 정한 제반 직무를 수행하나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일에 주력하며 성도들을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.

³ ‘안수집사’ 항목은 5 월 26 일 주일 임시공동의회에서 개정하여 추가된 내용이며 ‘협동장로 와 원로장로는 당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’ 라는 구절은 생략하였다.

제 23 조: 제직회는 본 교회 교역자, 장로, 안수집사, 권사, 서리집사로 구성하며 교회의 재정, 구제, 선교, 전도, 교육, 친교, 봉사등 제반 교회의 실제적인 업무를 처리한다.

제 24 조: 제직회는 업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책임 있게 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며 부서의 조직은 제직회에서 정한다.

제 25 조: 부서와 선교회등 교회내 각 기관의 조직은 당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 4 장 교회의 집회

제 26 조 교회의 모든 공적인 집회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집회의 외부강사는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서 초빙한다.

제 27 조: 교회의 모든 집회는 은혜와 질서 가운데(고전 14:33,40) 진행되어야 한다.

제 5 장 교회의 회의

제 28 조: 모든 회의는 등록 교인 과반수 출석을 개회 정족수로 한다. 정족수가 만족되어야 정식 회의로 개회 될 수 있다.

제 29 조: 정족수가 만족이 되지 않을 시 그 회의는 개회 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임시 회의로 진행 되어 질 수 있다.

제 30 조: 단, 담임 목사 청빙 및 직분자 선출 등 중요한 결정을 위한 투표가 요구되어지는 경우에는 정족수가 만족이 된 정식 회의에서 만 진행되어진다.

제 5 장 부 칙

1. 본 내규는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⅔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 즉시 시행한다.
2. 본 내규의 개정은 당회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 투표수 ⅔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정 주후 2020 년 7 월 12 일

개정 주후 2022 년 1 월 19 일

개정 주후 2023 년 1 월 15 일

개정 주후 2024 년 1 월 14 일

개정 주후 2024 년 5 월 26 일